



산림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입찰자격 관련 안내

1. 지자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입찰자격과 관련됩니다.

2.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의 입찰자격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 업무 처리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 2015.1 폐지)의 폐지와 관련하여

○ 위 훈령을 폐지한 것은 i)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매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훈령내용과 중복된다는 지적과 ii) 동 계획 변경 시 매년 훈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처 부담, 입법의 비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령의 재검토 기한(2015.1.) 일정에 맞추어 행정규칙을 정비(폐지)한 것임

○ 따라서 훈령의 폐지와는 관계없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산림사업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음

나.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입찰자격'과 관련하여

○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등이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람. 끝.

[별표 1] <개정 2014.9.1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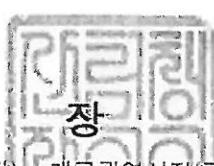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 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3. 나무병원방	가. 수특피해 진단·처방 나. 수특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특보호에 관한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특보호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숲길 조성·관리 다. 사방사업 라.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 원 이상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수득장림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특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3억 원 이상
6. 도시림 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 원 이상

비고

-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종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산림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연생태과장), 부산광역시장(산림녹지과장), 대구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 인천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 광주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 대전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 울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축산과장), 경기도지사(산림과장), 강원도지사(산림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 충청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산림산업과장), 경상북도지사(산림자원과장), 경상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산림 휴양정책과장)

주무관 대결 2016. 1. 28.
방재일 임업사무관 김명관

협조자

시행 산림병해총파-447 (2016. 1. 28.) 접수 산림과-2502 (2016. 1. 29.)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http://www.forest.go.kr>

전화번호 042-481-4038 팩스번호 042-481-4109 / breakwall@korea.kr / 대국민 공개

사막을 녹색 숲으로! 지구를 푸른 꿈으로!

[붙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질의회신(건설공사 해당여부)

1. 대한전문건설협회-464(2016.4.6)호 관련입니다.

2. 질의사항

도시림 등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업무내용을 발주자가 제한할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단서에서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사업이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우라면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는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업무내용을 발주자가 제한할 수 있는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 소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무관대우 형명우 행정사무관 최두석 과장 전결 2016. 4.12
김정희

협조자

시행 건설경제과-2179 (2016.4.12.) 접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7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15 팩스번호 044-201-5546 / mwhyung@molit.go.kr /비공개(5,7)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2.0